

# 보 건 복 지 부

## 시 정 요 구

제 목 사설 장사시설 운영 부적정

기 관 명 해운대구, 사하구, 강서구, 연제구, 기장군

내 용

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묘지, 사설화장시설, 사설봉안시설, 사설자연장지의 설치·조성자 또는 관리인 및 장례식장영업자는 반기별로 매장, 화장, 봉안, 자연장 또는 장례식장의 관리·운영상황을 매 반기가 끝난 후 10일 이내 관할 시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그런데 2014년 이후 부산광역시 내 사설 장사시설의 운영 상황을 확인한 결과, 아래 【표】와 같이 11개의 시설에서 1회 이상 운영상황 보고를 하지 않았다.

【표】 사설 장사시설의 운영상황 제출 현황

| 구/군  | 시설명            | 분류   | 허가일            | 운영상황 제출 여부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| ‘14년<br>상반기 | ‘14년<br>하반기 | ‘15년<br>상반기 | ‘15년<br>하반기 |
| 해운대구 | ○○○○○원<br>장례식장 | 장례식장 | 2011.<br>3.15. | 미제출         | 미제출         | 미제출         | 미제출         |
| 해운대구 | ○○<br>장례식장     | 장례식장 | 1999.<br>9.1.  | 미제출         | 미제출         | 미제출         | 미제출         |
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해운대구 | ○○<br>장례식장          | 장례식장 | 2014.<br>1.2.  | 미제출            | 미제출             | 미제출             | 미제출            |
| 사하구  | ○○병원장례식<br>장        | 장례식장 | 2001.<br>4.29. | 2014.<br>7.7.  | 미제출             | 2015.<br>10.19. | 2016.<br>8.6.  |
| 사하구  | ○○○○병원<br>장례식장      | 장례식장 | 2010.<br>7.25. | 2014.<br>7.10. | 미제출             | 2015.<br>10.7.  | 2016.<br>7.18. |
| 사하구  | ○○○병원<br>장례식장       | 장례식장 | 2009.<br>6.5.  | 2014.<br>7.14. | 미제출             | 2015.<br>9.25.  | 2016.<br>7.18. |
| 강서구  | ○○○○병원<br>장례식장      | 장례식장 | 2012.<br>5.12. | 미제출            | 미제출             | 미제출             | 미제출            |
| 연제구  | ○○○○○○○             | 봉안시설 | 2003.<br>9.1.  | 미제출            | 미제출             | 미제출             | 미제출            |
| 기장군  | ○○○○○○○○○<br>○○장례식장 | 장례식장 | 2010.<br>2.16. | 미제출            | 2015.<br>1.6.   | 2015.<br>7.10.  | 미제출            |
| 기장군  | ○○○병원<br>장례식장       | 장례식장 | 2014.<br>4.1.  | 미제출            | 2015.<br>1.5.   | 2015.<br>7.1.   | 미제출            |
| 기장군  | ○○○○병원<br>장례식장      | 장례식장 | 2003.<br>3.1.  | 미제출            | 2014.<br>12.22. | 2015.<br>7.1.   | 미제출            |

**조치할 사항** 해운대구청장, 사하구청장, 강서구청장, 연제구청장, 기장군수는

**[시정]** 상황보고 미 실시 등 법령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4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시고,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